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양섭 의원 등 6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3월 14일
- 회부일자 : 2018년 03월 일

3. 제안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가. 웰다잉 문화 조성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규정 (안 제5조)
- 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활동 규정 (안 제6조)
- 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업무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규정 (안 제7조)
- 마.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규정 (안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도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등 필요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는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웰다잉”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타 시·도 조례에서 통용되고 있고, 해당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규정화된 적절한 용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는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사결과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 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민 홍보를 통한 인식 호가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 안 제7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0조에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담보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다. 종합의견

- 2017년 8월부터 제정·시행 중인 상위법령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웰다잉 문화의 핵심인 죽음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 및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된다 할 수 있으며,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죽음’이란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는 바,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